

수원지방법원 2021. 11. 2 선고 2021가단507994 판결 [지급명령(계약금 등 반환청구)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안
담당변호사 이인석

피 고 1. 주식회사 B
2. C
변 론 종 결 2021. 10. 5.
판 결 선 고 2021. 11. 2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4. 14.부터 피고 C는 2020. 12. 30.까지, 피고 주식회사 B은 2021. 3. 9.까지 각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7. 11. 5. 피고 주식회사 B(이하 '피고 회사'라 한다)과 사이에 화성시 D 외 5필지 지상 농어촌관광휴양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, 피고 회사에 계약금, 문화재 조사비용, 재해 및 환경성 평가 용역비용 등 합계 65,000,000원(이하 '이 사건 금원'이라 한다)을 지급하였다.

나. 피고 회사는 약정기한인 2018. 6. 14.까지 위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.

이에 원고는 2019. 4. 13.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기술용역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기지급한 이 사건 금원을 즉시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으며,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 반환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기술용역계약의 합의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금원 6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

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금원 중 20,000,000원만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, 위와 같은 합의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6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

다음날인 2019. 4. 14.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로서, 피고 C는 2020. 12. 30.까지, 피고 회사는 2021. 3. 9.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유선우